

특집 I / 제1회 수의정책개발 심포지움 :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⑤

수의행정 및 연구기능의 활성화 방안

배상호

1. 검토배경 및 필요성

○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축산물의 양적생산에서 질적인 생산 즉, 고품질의 위생처리육을 요구하고 있음.

-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접어들면서 육류소비는 급증하고 있음 ('70 : 5.2kg → '93 : 25kg).

- 국내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즉, 동물약품, 농약·중금속 등의 규제강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음.

- UR/SPS 협정의 무차별 원칙에 따라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검사 실시에 따라 국내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시기에 처하고 있음.

- 또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식품의 HACCP(Hazard Analysis Critical and Control Point)제도의 국내적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.

○ WTO 출범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지역 다변화 및 교역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.

- WTO/SPS 협정에 따라 동물 및 축산물검역의 무차별 원칙, 국제기준과의 조화, 동등성 원칙, 수입지역의 지역성 인정, 각종 제도·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.

- 또한 쇠고기는 2001년,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'97. 7. 1부터 완전자유화 하기로 예시하고 있음.

- 국제수역사무국(OIE)의 List A질병 15종 중 국내에

*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

발생하고 있는 질병은 2종(돼지콜레라, 뉴캐슬병)에 불과하나 기타 질병의 국내유입방지를 위하여는 검역기술 인력확보, 검역장비 및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.

○ 가축위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세계화에 걸맞는 균형된 행정조직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.

-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는 국가고유업무로서 지방화 시대에도 이는 국가중앙통제로 업무를 오히려 강화하여야 할 업무임.

- 외국의 경우

- 일본은 농림성에 “가축위생과”와 후생성 “유육위생과”로 구분하여 업무담당

- 미국·유럽 등 선진국은 수의국(또는 수의청)에서 업무담당

- 또한 외국과의 업무협의, 협상시의 동등한 자격요건을 위하여 상호대등한 레벨의 직급(최소한 국장급)유지가 필요함.

○ 보건복지부의 “식품·의약품 관리청” 신설에 대한 축산물위생검사체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.

- 국민보건향상 및 국내축산업보호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·유통·가공·가격관리 및 보관에 이르기 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생산자 즉, 농민과 국민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즉, 미국의 FSIS(Food,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)체제로의 개편이 요구됨.

2. 기축위생업무의 여건변화(행정수요 및 업무량 증가)

가. 새로운 업무개발 등 추진

○ 축산분뇨처리기술 보급 및 자원화 추진

- 축산경영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축산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.

- 이에 따라 축산분뇨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분뇨를 자원화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(예 : 네덜란드 등의 경우 양돈장의 생산비중 축산폐수처리비가 15%, 가축방역비가 5%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정반대(5%, 15%)인 실정임).

- 분뇨는 전염병 전염원으로서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도 중요시되고 있음.

○ 축산물 잔류물질 방지대책 추진

-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내산 육류내의 항생제, 살포제 등의 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양성으로 확인된 바 있음.

-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하나 여러가지 이유(양축가 손실, 소비자 불신 등)로 집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.

- 그러나 SPS 협정의 무차별 원칙, 국민의 국내산 육류의 신뢰도 제고로 국내산 육류의 고품질화 유도,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“잔류물질방지 종합대책”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함.

· 현재는 매년 45,000건의 모니터링을 실시, 양축농가에 대한 홍보·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.

(참고)

※ 잔류원인 분석결과

휴약기간 미준수	불법약제 사용	사료 오염	사양관리 불량	계
54.5	27.3	9.1	9.1	100%

○ 축산물가공업무의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추진

- '85. 7. 1일자로 축산물위생처리법(종전 : 축산물 가공처리법)을 개정하여 축산물가공품은 보건복지

부 소관사항으로 이관.

- 그러나 축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에 이르기까지 축산물위생업무의 전문적인 수의사가 관장하여야 하며, 생산자인 양축농가와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· 미국·캐나다·이태리·프랑스 등 모든 나라에서는 농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후생성 유육위생과(수의사)에서 가공업무를 관장함.

※ 수입축산물의 검역 및 검사업무는 행정권한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에 의거 동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 수입축산물 1차 가공품(포장육)은 지침을 개정하여 동물검역소로 업무이관.

○ 종식단계에 있던 또는 새로운 가축전염병의 발생

- 광견병의 경우 '85년에 1두 발생된 이래 8년만에 '93년 12월에 발생되었고, '94년에도 29두 발생.

· 휴전선 인근지역의 야생동물(오소리, 너구리)에 의하여 감염확인.

- 탄저의 경우 '78년에 1두 발생된 이래 16년만에 '94년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되었으며 '95년에도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바 있음.

- 돼지오제스키병은 '87년, 닭전염성 후두기관염(IL-T)는 '84년, 가시옹애는 '91년부터 국내 처음 발생.

○ 세계화·지방화시대에 맞는 법령·제도정비 및 운용

- 축산물위생처리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수의사법 및 약사법 운용.

- 그에 따른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, 예규, 공고 등의 제정·개정 등

-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위생조건을 수입선 다변화에 따라 100여개 운용하고 있으며 100여개국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음.

나. 위생업무의 증가(현황 별첨)

○ 도축검사('70기준 '94대비 : 4.2배 증가)

○ 원유검사('70기준 '94대비 : 4.2배 증가)

○ 가축방역(검진)('70기준 '94대비 : 2.4배 증가)

○ 검역('70기준 '94대비 : 3.0배 증가)

3. 외국의 수의관련 기구 비교

업무	한국	미국	일본
중앙조직	농림수산부 - 가축위생과	농무성(USDA) - 식품위생검사국(FSIS) - 동식물위생검사국(APHIS)	농림성-가축위생과 후생성-유육위생과
가축질병 연구	농진청 - 수의과학연구소	농무부 농업연구청 국립 가축질병센타(NADC/ARS/USDA)	농무성 가축위생시험장
가축방역 전단 (병성감정)	수의과학연구소 (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)	농무부 동식물검역청 국립수의학 혈청검사소 (NVSL/APHIS/USDA)	지방 가축보건소
수출입동물검역	동물검역소	농무부 동식물검역청 국립수의 혈청검사소 (NVSL/APIIS/USDA)	농무성 동물검역소
동물약시	농림수산부 (수의과학연구소)	농무부 동식물검역청 국립수의 혈청검사소 (NVSL/APIIS/USDA) 보건부 식품의약품 관리청 수의학 센터(CVM/FDA/USDHHS)	농무성 동물약품검사소(중앙약사심의위원회)
축산물 위생	수의과학연구소 (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)	농무부 식품안정검사청 (FSIS/USDA)	후생성(유육위생과) 국립위생시험원 지방 보건소
수입축산물검사	동물검역소	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(FSIS/USDA)	후생성 검역소

4. 현제도의 문제점

○ 행정조직의 다원화로 강력한 중앙통제 수의행정의 수행이 지난함.

-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,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, 내무부(시·도) 가축위생시험소 등 수의행정조직의 다원화로 신속·정확한 업무집행 지난.

○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범국가적 차원의 가축방역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음.

-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가축방역체계 정비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·장학한 진단 및 방역조치로 전염병 확산방지로 양축농가의 피해 최소화 요구.

○ 선진화·세계화·국제화에 걸맞는 국가 수의행정조직의 개편 필요

- 외국의 수의조직과 대등한 수준의 수의조직 개편으로 국가 공신력 제고 필요.

5. 대 책

기본목표

○ 가축위생업무의 중앙통제기능 확립

⇒ UR협상타결에 따른 국내외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

- 가축방역체계의 강화
 - ⇒ 국내방역 및 국제검역의 효율적 대처
- 축산물내 잔류물질 방지 등에 효율적 대처
 - ⇒ 수입축산물 및 국내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로 국민보건 향상 기여
- 가축위생 연구업무의 활성화

【제1안】

[기본방향]

- 국립수의검사소(가칭)를 신설
 - WTO 출범에 따라 선진국(미국의 FSIS)의 수의관련조직과 형평성 유지

○ 국립수의검사소에 국립동물검역소 및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의 진단·검사기능을 이관하여 실험실 정밀검사(Laboratory inspection) 전담
-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를 국립수의검사소 산하기관(2차 관서)로 개편

○ 농림수산부에 동물검역소 국제정보과를 “동물방역과”로 개편
- 동물검역소 지소(5개소)를 본부 1차 관서로 개편.
○ 수의과학연구소 내에 “해외악성가축전염병 연구센타” 설치.

【제2안】

[기본방향]

- 가축위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 수의 조직의 개편
 -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검사소(가칭)로 개편

○ 국립수의검사소에서 수입동물·축산물 및 국내동물·축산물에 대한 가축전염병검사 및 위생검사업무 담당.

-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를 국립수의검사소 산하기관(2차 관서)으로 개편.

○ 농림수산부에 국립동물검역소의 국제정보과를 동물방역과로 개편

- 국립동물검역소 지소(5개소)를 본부 1차 관서로 개편.

○ 수의과학연구소는 순수연구 및 유전공학 등 첨단업무 주력.

- 수의과학연구소 내에 “해외악성가축전염병 연구센타” 설치.

【제3안】

[기본방향]

- 국립동물검역소의 조직 및 인력보강
 - 개방화·국제화·정보화 시대에 적극대처

○ 검역기술 인력보강

- (현) 203명 → 448명(증 245명)

○ 수의관(4명) 해외주재로 검역 및 방역정보 신속 입수 및 대처

- 미국·일본·EU 및 호주

○ 부산지소에 정밀검사과 및 대전지소 신설

○ 수의과학연구소의 기능강화.

- 동물약품부 및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연구센타 설치.

가축위생업무실적

구 분	'80(A)	'90	'94(B)	비고(B/A)
도축검사(천두)	2,542	9,157	10,667	420%
○ 소	537	554	778	149
○ 돼지	2,005	8,603	9,889	493
원유검사(천톤)	452	1,752	1,917	424
가축방역(천두수)	5,642	5,187	5,053	90
○ 예방주사	5,308	4,559	4,284	81
○ 검 진	316	628	769	243
검 역	1,580	3,484	4,803	304
○ 동 물(건수)	1,318	2,725	3,949	300
○ 축산물(천두)	262	759	854	326